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4년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종합감사 -

2024. 6.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 II.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 1. 일반 현황 2
 - 2. 예산 현황 2

- III. 감사 결과 3
 - 1.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급여 외) 집행 부적정 3
 - 2.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5
 - 3.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7
 - 4.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12
 - 5. 여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13
 - 6.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15
 - 7. 채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17

- IV. 처분 요약 1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사)한국창업보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인사·복무 등 기관운영과 정부 보조사업 집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로 인사·예산·계약·복무 등 기관 운영의 절차에 대한 적법성 준수 여부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과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제도 등의 추진 절차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 감사에 앞서 2024. 4. 16.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4. 24.부터 5. 10.까지 11일간 감사 인원 4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 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4. 6. 26.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협회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보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법의 수집과 보급을 추진하며, 창업보육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2000년 3월에 설립되었다.

협회는 기술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창업보육 전문인력 자격제도, 국·내외 창업보육 관련기관과의 국제협력, 창업보육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협회의 조직은 3부, 6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정원 21명, 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산 현황

협회의 2024년 예산은 총 9,98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8,636백만원, 일반회계 1,346백만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는 2022년 대비 15% 감소, 2022년은 2021년 대비 1.3% 증가, 2021년은 2020년 대비 2.7%, 2020년은 2019년 대비 8.5%, 2019년은 2018년 대비 14.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감사 결과

Ⅲ-1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급여 외) 집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협회는 창업보육센터(이하 “BI”라 한다) 운영지원 및 BI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위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급여, 퇴직연금, 정액급식비, 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협회 「창업보육센터 지원 세부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은 급여, 퇴직연금, 정액급식비, 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임직원의 급여를 사업 참여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회는 보조사업 참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그 외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협회 자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협회는 보조사업 인건비 항목 중 급여는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퇴직연금, 정액급식비, 제수당 등 급여 외 인건비 항목은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9,930,326원의 보조금을 보조사업 참여율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① 앞으로 보조사업 이외 업무수행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며, (기관경고)

② 보조사업 참여율을 초과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인건비 불인정 금액은 반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협회는 BI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BI 운영기관의 특성 및 역량 등에 기반하여 ‘산학협력형’, ‘산업특화형’, ‘지역거점형’으로 유형화하고 BI의 특성화 역량강화 및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운영·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협회는 「창업보육센터 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평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서류를 토대로 지원자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평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협회는 “2024년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산학협력형·산업특화형·지역거점형 유형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전문가 5명)를 각각 구성하여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라 기관별 의지 및 인프라,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계획 등을 평가하였고, 득점 순위에 따라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지역거점형 신청 주관기관 강릉원주대의 경우 정량평가 항목인 “사업추진 역량 점수”가 2점과 8점(계 10점)으로 사전 평가·제공되었으나, 5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 7점과 9점(계 16점)으로 잘못 부여하였고, 그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76.3점이 아니라 75.6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거점형 평가지표 설명서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인 “사업 전담 인력(매니저) 확보 및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비율(배점 10점)” 중 “사업 전담인력(매니저) 확보” 점수(배점 5점)는 참여기관(주관BI+참여BI)별 전담인력(매니저) 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최종점수)하여야 하지만, 산출한 최종점수를 다시 배점표의 평균 전문매니저 수에 대입(배점)하여 전담인력 확보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신청기관의 평가점수를 0.3점~1.0점 높게 평가하여 선정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앞으로 사업추진 역량, 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정량평가 항목의 점수 합산·산출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협회는 2014. 7. 15. 「자격기본법」에 따라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자격발급기관으로서 매니저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근거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운영규정에 따라 매니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 시험위원 위촉 관련 >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출제위원, 시험감독위원, 관리위원으로 구분하며, 출제위원에는 선정위원, 검토위원, 채점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출제위원(선정, 검토, 채점 관련)을 위촉할 경우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출제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가급적 동일 종목(과목)에 연속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한편, 시험감독위원은 운영요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실 당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자 제재조치 관련 >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르면 감독위원회는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시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부정행위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협회장은 관계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험자에게 응시 제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협회장이 부정행위자로 확정결정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3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한편,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협회 주관부서장은 부정행위자 등 합격무효 또는 취소된 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및 결과보고 관련 >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르면 협회는 시험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3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협회장은 시험시행 결과를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검토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시험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절

1) 출제위원 자격기준 검증 부실

협회는 자격시험 회차별로 출제위원(선정위원, 검토위원)을 위촉하였는데 위촉하는 위원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이력서 또는 프로필 등 위촉 위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52명의 출제위원(선정위원, 검토위원)을 위촉하였는데 이 중 9명은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

2) 출제위원(선정위원, 검토위원) 연속위촉 배제 소홀

협회는 자격시험 출제위원(선정위원, 검토위원)을 위촉하면서 제18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등 4차례에 걸쳐 동일 종목(과목)에 이전 차수의 출제위원을 연속하여 위촉하였다. 연속 위촉한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과목 모두에서 발생하였고, 연속으로 위촉한 위원수는 11명이며 이 중 3명은 협회 임직원으로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속 위촉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위원이다.

3) 채점위원 자격요건 검토 등 부실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출제위원에 포함되며, 출제위원은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고, 가급적 동일 종목(과목) 연속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회는 공무원, 교직원 등의 시험감독위원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관리위원을 채점위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연속위촉 배제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다.

4) 시험감독위원 배치 부적절

협회는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실별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2. 10. 15. 제23차 시험부터 감독위원을 시험실당 1명으로 축소하여 배치하였다.

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와 예산상의 이유로 시험실당 감독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감독위원의 배치를 축소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내부보고를 거쳐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위원을 자의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험 질서유지 등 시험관리에 허점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

나. 부정행위자 제재조치 미이행

협회는 '20. 10. 17. 시행한 제19차 자격시험에서 통신기기(스마트 밴드)를 휴대한 수험자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하였으며, 당시 협회 인력양성부 B 대리는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19차 자격 시험 운영 결과보고서를 기안하고, A 부장 및 E 부회장의 검토를 거쳐 '20. 10. 26. 협회장 결재까지 받았으나, 해당 부정행위자에게 제재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정행위자가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매니저 자격시험 접수를 제한 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부정행위자가 '21. 5. 15. 제20차 매니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1. 7. 14. 매니저 자격증을 발급받게 됨으로써 매니저 자격 시험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적정성 등이 훼손되었다.

다.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보고 부적절

1) 이의신청 처리 부적절

협회는 최근 5년간('19~'23년) 제16차부터 제25차까지 총 10차례의 매니저 자격시험중에서 제20차, 제22차, 제24차, 제25차 등 4차례의 시험문제에 대해 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조치하였다.

그런데 협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지않고, 채점위원 3인의 검토에 따라 수용 또는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채점위원은 공무원, 교직원 등 시험문제 관련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제20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3인이 논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22차, 제24차, 제25차 시험의 경우 논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제24차 시험의 경우 중복답안이 인정되는 출제오류 사항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비전문가가 포함된 채점위원이 검토 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하였다.

또한, 제22차 시험의 경우 공지된 이의신청 기간('22.5.21~5.23)이 지난 '22. 5. 31. 응시자로부터 재채점 요구를 받아 채점 오류(OMR카드 오류로 0점 처리) 확인 뒤 당일 합격 처리·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매회차 자격시험 운영 결과보고서를 담당팀장이 기안하여 협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고 있는데 제22차 자격시험은 자격시험 운영 결과보고서를 상신하지도 않은 채 '22. 5. 31. 합격자를 확정하여 공지하고 자격시험 운영 결과보고서는 '22. 6. 9. 상신하였으며, 협회장은 '22. 6. 28. 결재하였다.

2) 시험시행 결과 중기부 보고 부적절

협회는 최근 5년간 제16차부터 제25차까지 총 10회의 매니저 자격시험을 시행 하면서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라 시험시행 결과를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공식 문서로 보고된 바가 없었고 문자나 이메일로 시험시행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① 앞으로 매니저 자격시험 운영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을 부적절하게 위촉·배치하고, 중기부에 시험시행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이의신청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앞으로 매니저 자격시험 부정행위자가 채용시·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 행위자 제재조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주의)

③ 매니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가 제재조치 기간내 시험에 채용시킬 수 없도록 신청·접수 시스템(BI-Net) 개선 하는 등 자격시험 부정방지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협회는 창업보육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의견수렴과 지역별 창업보육 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해 2019년 BI 센터장 워크숍과 2020년 협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요 비용을 협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협회 「예산집행지침」 III. 비목별 지침 3.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법인카드는 골프장 등 레저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이며,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협회는 2019년 BI 센터장 워크숍 및 2020년 임원 워크숍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 이용, 주류 구입 및 23시 이후 사용, 50만원 이상 집행 건에 대하여 참여 인원 미확인 등 협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협회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총 2,419,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앞으로 법인카드가 골프장 이용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협회는 주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 시 여비 지급을 「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BI 운영지원 및 BI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따른 여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그 외 여비는 협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협회는 비상근협회장에게 연봉 등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협회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협회장에게 기관 간 섭외,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에 사용하도록 매월 25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협회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출장은 시내 출장과 시외출장으로 구분하며,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 여비규정에 따라 항공·철도 등 운임과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를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공무원 여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나,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 비상근회장의 출·퇴근 비용은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장 여비는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비상근직(회장)에 대한 출장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는 공무로 출장하여 귀임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데 협회는 '19년부터 '23년까지 기간 동안 비상근 회장이 거주지로부터 근무지인 대전광역시 협회 집무실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및 회의' 등의 사유로 출근하고 다시 거주지까지 퇴근하는 것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비상근회장에게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임 과다 지급

협회는 비상근회장에게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지인 협회가 있는 대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 전주 등을 출발 기준으로 비용을 집행함에 따라 운임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앞으로 비상근 임원 등의 출·퇴근 및 출장 시 복무규정 및 여비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비 지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협회는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약 255백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협회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승진평가 대상자는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기간 이상 해당 직위에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 「인사고과 운영지침」(이하 “인사고과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12월에 정기 인사고과를 실시하며, 인사고과 결과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 「급여규정」(이하 “급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기준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인사고과 당해연도 입사자와 승진자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한 자체 규정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일부 승진평가 대상자의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기간 미충족

협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평가 시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기간을 충족한 인원만을 승진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7명은 평가대상기간이 승진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명은 평가대상기간이 최저승진 소요기간을 충족하나 대상기간 도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일과

평가대상기간 말일까지 기간은 평가가 사실상 누락됨에 따라 최저승진 소요기간이 미충족 되었다.

나.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 인사발령사항 미반영

협회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입사일, 승진발령일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가연도 도중 입사자, 승진자가 있는데도 인사고과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① 앞으로 승진평가 시 평가대상기간이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기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평가대상기간 도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업무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② 성과급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성과 평가연도 중 발생한 승진 및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협회는 「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책상, 의자, 서랍장, 컴퓨터, 전화기, 복합기 등 약 100여 개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재산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산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운용, 관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산관리 대장 미작성

협회는 자산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일부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24년 4월 현재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기재물 조사 미실시

감사 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재물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물조사를 미실시하여 자산의 연도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치할 사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은

앞으로 자산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재물조사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자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IV. 처분 요약

1.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 주의·경고 8건(개인 2, 기관 6), 통보 3건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급여 외) 집행 부적정	(사)한국창업보육협회	경고 통보	-	'24. 8월	
2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주의	-	'24. 8월	
3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 시험 운영 부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주의 통보	주의(2)	'24. 8월	
4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주의	-	'24. 8월	
5	여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주의	-	'24. 8월	
6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통보	주의(3)	'24. 8월	
7	재물조사 미 실시 등 자산 관리 부적정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주의	-	'24. 8월	

2. 개인 처분 명세 : 주의 4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A	◎			①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 부정행위자 제재조치 미이행 ②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2			B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 부정행위자 제재조치 미이행
3			C	○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4			D	○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 : 1건, ◎ : 2건